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하나UBS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 39 조(보수)	제3항 [종류A, C, C-F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종류A, C, C-F 수익증권]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국내채권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국내채권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인Best연금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인Best연금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50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3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하이일드 모투자신탁 및 유로 하이일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국내채권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수>** (생략) 신탁업자 0.0500%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 하이일드 모투자신탁 및 유로 하이일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인Best연금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수>** (업데이트) 신탁업자 0.03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가. 투자대상**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국내채권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국내채권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가. 투자대상** <삭제> **나.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인Best연금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인Best연금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재형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미국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하나UBS 유로 하이일드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하나UBS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인Best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다.	
제 39 조(보수)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제3항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나. 모자형 구조 하나 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나.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국내채권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국내채권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가. 투자전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인Best연금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인Best연금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5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보수 : 0.03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신탁업자 0.0500%	**<보수>** 신탁업자 0.03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투자전략** 하나UBS 국내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삭제> **2. 투자전략** <삭제>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국내채권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국내채권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3. 운용전문인력** (생략)	(2) 시장 국면에 따라 하이일드 모펀드 및 인Best연금 모펀드 투자비중 결정 - 시장 하락 국면으로 판단시에는 하이일드 모펀드 투자비중 축소 (신탁재산의 70% 수준까지) 인Best연금 모펀드, 유동자산 투자비중 확대 (신탁재산의 30% 수준까지)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2.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3) 비교지수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 및 어음에 10%수준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 1) 비교지수: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 년구간) 30% +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회사채(1-3 년구간) 55% + BB 급(3 월-1 년) 15%) (주석 추가)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 1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하나UBS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비교지수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1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2) 투자대상** <삭제>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파워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 및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의 집합투자증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의 집합투자증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주1) 비교지수 :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15%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10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BP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1-3년구간) 30% + 회사채(1-3년구간) 55% + BB급(3월-1년)1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변경후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인Best인텍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삭제>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펀드명 변경 (하나UBS 인Best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 하나UBS 인Best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d></td><td>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td><td><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d><td>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투자집합투자기구
가.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인 Best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 호)[주식-파생형]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td><td></td></tr>
</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자집합투자기구
가.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td><td></td></tr>
<tr><td>기타</td><td colspan="2">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able></td></tr>
</table>

	<table><tr><td></td><td>경우에는 30% 이내)</td></tr><tr><td>기타</td><td>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table>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증권(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증권(주식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삭제>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인Best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삭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삭제> 2.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나.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5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5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비교지수 **:** [(KOSPI지수 * 36%)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지수 * 36%)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비교지수는 [(KOSPI지수 X 36%) + (CD금리 X 64%)] 이었습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4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 1) 비교지수: [(KOSPI 지수 * 36%)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36%) + (CD 금리 * 64%)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KOSPI200지수 * 4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0% 주 2)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 지수*36%) + (CD금리 * 64%),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 36%)+(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지수 * 36%)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지수 * 36%)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를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퇴직연금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4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비교지수는 [(KOSPI지수 X 36%) + (CD금리 X 64%)] 이었습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 1 참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 * 36%)+(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 1 참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4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 지수*36%) + (CD금리 * 64%),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 36%)+(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64%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1>

변경 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0%이상**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하나 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미만**	■ 업종 대표주, 대형 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종목에 투자를 원칙으로 함 ■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주, 성장주 비중은 탄력적으로 조정함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와 더불어 시황변동에 따른 주식 편입비 전략을 병행 ■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투자환경 급변시 제한적 파생상품 활용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변경 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50%이상**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미만**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UBS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2. 하나UBS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삭제> 4.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나.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으로 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나. "하나UBS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으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 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득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비교지수 **:**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2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비교지수는 [(KOSPI지수 X 18%) + (CD금리 X 82%)] 이었습니다.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증권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 1) 비교지수: [(KOSPI 지수 * 18%) + (KIS 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지수*18%) + (CD 금리 * 82%)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KOSPI200지수 * 2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0% 주2)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X 18%) + (CD금리 X 82%)],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퇴직연금인덱스모투자신탁,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장기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잔존만기 1년이상을 기준으로 단기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미만에서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2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인덱스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비교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 비교지수는 [(KOSPI지수 X 18%) + (CD금리 X 82%)] 이었습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 1 참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 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KOSPI2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별첨 1 참조>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20%)+(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0%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X 18%) + (CD금리 X 82%)],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 * 18%) + (KIS종합채권지수 중 국채+특수채+통안채지수)*8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1>

변경 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70%이상**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하나 UBS 퇴직연금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미만**	■ 업종 대표주, 대형 우량주 등 블루칩 종목군 및 저평가 종목에 투자를 원칙으로 함 ■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주, 성장주 비중은 탄력적으로 조정함 ■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Top-down approach 를 바탕으로 주식 편입비 조정을 통해 초과수익 실현 ■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Buy & Hold 전략으로 장기 자본이득 추구와 더불어 시황변동에 따른 주식 편입비 전략을 병행 ■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투자환경 급변시 제한적 파생상품 활용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변경 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전략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증권모투자	**70%이상**	■ 원리금 보장 가능한 국공채 및 공사채를 투자대상으로 한정 ■ 금리 보합내지 하락전환시는 적극적인 자산교체를 통한 편입자산 만기조정 ■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

신탁[국공채]		■ 기본 Portfolio 에 대한 Duration 조정은 현물과 금리선물 등 채권파생상품을 활용하며,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방어
하나 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미만**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플러스증권자투자회사(제2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변경
   - 부책임운용역 변경
   - 비교지수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상호 및 종류)	④회사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Best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2.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④회사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부책임운용역 변경(권태남 → 조익환)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권태남 (주석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28.5%)+(매경BP국공채1년지수*71.5%) 주1)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회사재산의 30%이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비교지수(Benchmark) :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회사는

	및 채권에 95%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28.5%) + (매경BP국공채1년지수*71.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인Best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 1) 비교지수: (KOSPI 지수*28.5%) + (통안채 1 년지수*71.5%)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28.5%) + (통안채1년지수*71.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하나UBS인Best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삭제>

	<추가>	**비교지수:**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 ※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4.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권태남	**4. 운용전문인력**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28.5%) + (통안채1년지수*71.5%)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1) 비교지수 : KOSPI*25%+매경BP국공채1~2년지수*70%+Call금리×5%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지수*28.5%) + (통안채1년지수*71.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변경
   -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 변경
   - 비교지수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i-사랑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공모주&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변경 - 책임운용역(나성욱 → 김정표) 및 부책임운용역(권태남 → 조익환) 변경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나성욱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권태남 (주석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정표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조익환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

		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추가> <br

	다. 수익구조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다. 수익구조**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비교지수 : (KOSPI*47.5%)+(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 주 2) 비교지수가 2009 년 1 월 1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KOSPI 수익률*47.5%) + (CD *52.5%)이었습니다. 비교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 매경BP국공채1~2년지수* 70% + KOSPI*25% + Call금리*5% 주2)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설정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수익률*47.5%) + (CD *52.5%),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47.5%)+ (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2. 투자전략**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2. 투자전략** <삭제>

	(제1호)[채권혼합] **3. 수익구조** **모투자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하나UBS i-사랑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추가> <br

		31일까지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수익률*47.5%) + (CD *52.5%),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3일까지 비교지수 수익률은 (KOSPI*47.5%)+ (매경BP국공채1년지수*52.5%)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28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제1항 <삭제> (순차적 연번 변경)

	제3항 2.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제5항 1. (이하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2. (이하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제3항 2.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3.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4. 제1항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5항 1.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2.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4시 이전까지로 하되, 14시 경과 후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운용역 변경 (김정표 → 나성욱)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정표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나성욱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다. 모자형 구조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삭제>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삭제>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집합투자기구**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마. 운용자산규모 (생략)	라.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업데이트) 마.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신탁재산의 70% 이상으로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운용전문인력 :** 김정표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삭제>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을 신탁재산의 70% 이상으로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운용전문인력 :** 나성욱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운용역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28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들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⑧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제>
	⑨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2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⑦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9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⑩제3항 내지 제9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제4항 내지 제9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⑪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⑧제3항 내지 제7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현행과 동일) 2. 제4항 내지 제7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⑨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운용역 변경(김정표 → 나성욱)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표 <주석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나성욱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별첨 1 참조>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하나 UBS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10)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 수익자가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8)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생략)	<삭제>
	(10)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11)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

	연금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연금 BRICs 플러스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연금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재간접형]	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삭제>

	(2) 투자대상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밸류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과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펀드를 신탁재산의 70% 이상으로 투자하여,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김정표	**(2) 투자대상** <삭제>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 나성욱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8)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삭제>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스마트 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2)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별첨 1>
[변경 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 [주식혼합]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투자신탁[채권]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 [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스마트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변경 후]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자[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국공채]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자[주식]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

이머징 국공채자[채권-재간접형]	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포커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중국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1.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가. 하나UBS 중국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삭제>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9310) - 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AO053)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삭제> - 하나 UBS 차이나대표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AO05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2월 24일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재간접 구조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재간접 구조

에 관한 사항	- 중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 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100%이하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중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하나 UBS 차이나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100%이하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투자신탁 (1) 투자대상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모투자신탁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투자신탁 (1) 투자대상 <삭제> 나. 모투자신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중국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비교지수(Benchmark) : MSCI China 100% 주1)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위하여 MSCI China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2) 비교지수(Benchmark) : MSCI China(T-1)*95% + Call*5%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중국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다. 수익구조**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주석추가>	**1. 재무정보** 주 1)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 240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 1) 비교지수: : MSCI China 100%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비교지수: MSCI China(T-1)*95% + Call*5%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MSCI China 10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비교지수 : MSCI China 100% 주)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위하여 MSCI China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삭제> (3) 비교지수 : MSCI China(T-1)*95% + Call*5% 주1)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하나UBS 중국포커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투자전략** <삭제>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 100%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T-1)*95% + Call*5% 이 비교지수는 2017년 0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MSCI China 10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파생형]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